



단체사목부

2012년 실무자 기획연수

1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평신도 교령)

1. 사도직의 다양한 형태

“평신도들은 개인적으로 또는 다양한 공동체나 단체에 가입하여 사도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5항]

2. 가톨릭 운동

“수십년 전부터 여러 나라에서 평신도들이 날로 더욱 열심히 사도직에 헌신하며 결성한 여러 가지 형태의 운동과 단체는 교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참된 사도직 목적을 추구해 왔고 또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나 좀더 오래된 유사한 단체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주목하여야 할 것은 ‘가톨릭 운동’이다.” [20항]

1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평신도 교령)

3. 사도직에서 준수하여야 할 질서

“개인이든 단체든 그리스도인들이 수행하는 평신도 사도직은 바른 질서로 교회 전체의 사도직과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 더욱이 하느님의 교회를 다스리도록 성령께서 세워 주신(사도 20,28참조) 주교들과 이루는 일치는 그리스도인 사도직의 본질적 요소이다. 또한 다양한 사도직 활동 사이에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교계가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23항]

II 교황문헌(평신도 그리스도인 1988)

1. 평신도 단체들을 평가하는 기본적 기준

1) 성화의 소명

그리스도교 생활의 완성과 사랑의 완덕을 향한 성숙으로 나타나야 함

2) 가톨릭 신앙고백의 책임

교회 교도권에 순종하여 교회가 가르치는 진리를 수용하고 선포해야 할 책임

3) 확고하고 진정한 친교

교황과 주교의 교의적 가르침과 사목 지침들을 수용하는 자세

4) 교회의 사도직 목적에 대한 순응과 참여

모든 형태의 단체들은 각기 재복음화에 참여하고 선교 열정을 지님

5) 인간 사회에서 교회의 현존을 위한 투신

교회의 사회교리에 따라 인간의 전인적 존엄성에 봉사하도록 투신

Ⅲ 서울대교구 단체에 관한 교령 반포

1.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립)단체 승인 및 변경에 관한 규정

1) 반포일 : 2009. 10. 26.

2) 제정목적 :

평신도들이 서울대교구 내에서 단체 결성을 통해 자신들의 고유한 방식으로 교회의 생활과 사명에 참여하고, 특별히 세상 사물의 질서에서 자신들의 특별한 소명을 복음 정신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후원하는 동시에 새로이 결성될 단체들에 대한 승인 및 감독과 그 변경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있다. 그리고 이 규정은 여타 수도회들의 재속 제3회에 속한 단체들이 갖는 고유 정관을 존중하면서도 서울대교구 내에서 사도직 활동을 수행할 경우, 그들에 대한 업무도 다루기 위함.

3) 주요 내용 : 결성 및 인준과 관련된 규정, 감독 및 후원과 관련된 규정, 단체의 합병 및 분할과 그 활동의 정지 및 소멸

2.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립)단체 인준심사위원회 회칙

1) 반포일 : 2009. 10. 26.

2) 제정목적 :

평신도 사도직 단체의 고유한 특성과 자율성이 존중되면서도 교회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평신도(사립)단체 인준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주교평의회에 보고함으로써, 교구장의 단체 승인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보조를 위함

3) 주요 내용 : 조직과 회의 관련 규정

Ⅳ 단체사무부 설립 목적

- 1. 평신도 [사립] 단체의 인준**
- 2. 평신도 [사립] 단체 활동 격려 및 감독**
- 3. 평신도 [사립] 단체 교류 협력 및 지원**

Ⅴ 주요 업무

- 1. 평신도 [사립] 단체들의 인준 절차 지원**
- 2. 서울교구내 사도직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평신도 [사립]단체에 대한 교구장의 순시 감독을 위한 업무보조**

Ⅵ 단체사목부 설립

일 자	단 체 사 목 부 연 혁
2007 12.18	사목국 내 단체사목부 신설
2009 10.26	“평신도(사립)단체 승인 및 변경에 관한 규정” 인준심사위원회 회칙” 반포
2010 02.23	단체사목부 담당사제 부임
2010 10.08	제1차 인준심사위원회 개최
2011 05.20	제2차 인준심사위원회 개최
2011 07.19	서울대교구 (사립)단체와 담당사제 임명
2011 09.29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사립)단체 도서 발간

Ⅶ 인준안내

1. 인준 받은 단체란?

교구 관할권자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가톨릭 사립단체임을 의미합니다.

2. 인준 대상 단체

교구 내 활동을 원하는 모든 사립 단체

3. 인준 받은 단체의 권리

- 1) '가톨릭' 혹은 '천주교' 명칭사용
- 2) 교구 공식 홍보 매체를 통한 단체 활동 홍보
- 3) 교구청 직할 시설물 사용
- 4) 교구 주소록 및 홍보물, 한국 천주교 주소록에 등재
- 5) 단체 간 협의 필요 시 중재 요청

Ⅷ 인준단체 현황

1. 단체사목부 소속 : 57개 단체
2. 사회사목부 소속 : 170개 단체

교구 내 단체 총 227개 단체

Ⅸ 인준준거

1. 정관상 명시해야 할 내용

가. 명칭 나. 목적과 활동(사업) 다. 성격 라. 소재지 마. 담당사제
바. 감사 사. 회원 아. 임원 자. 운영(회의) 차. 부칙

2. 서울대교구 단체에 대한 명칭체계의 표준화

가. 국제조직으로 활동을 하는 단체일 경우는 “한국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국내에서만 활동할 경우는 전국” 이라는 용어로 개칭한다.

나. “사도회” 는 “사도직협회(협의회)” 로 개칭한다.

[참고] 유관단체 안내

서울대교구에서는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고 교육, 상담, 연구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를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립)유관 단체” 로 분류합니다.

유관단체는 교육, 상담, 연구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는 단체로서 설립된 지 3년 이상 경과하고, 교회에 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정관에 교회에 관련된 목적을 명시하고, 이익이 사회 및 교회공동체를 위하여 환원되는 단체입니다.

또한, 인준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유관단체로 지정한 단체도 유관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X 2011년 ‘새로운 복음화’와 단체사목부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화”

1. “새로운 복음화”의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여 단체들의 인준과 교회 내 평신도 사도직 활동을 파악한다.
2.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화”를 위하여 사도직 단체와 교구와의 교류 협력과 연대를 모색한다.

1. 인준승인 심사지원
2. 인준승인 단체 지속적 관리
3. 교구와 평신도(사립) 단체의 연대강화
4. 교구내 [사립]단체 활성화 기반마련

XI 2012년 사목목표 및 업무계획

인준승인 심사지원 및 인준단체 관리

인준심사지원 : 2회/년

단체 현황 및 활동파악

인준단체 지원업무

면담을 통한 개선책 마련

단체간의 네트워크
(홈페이지 구축)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화

대화를 통한 복음적 변화 추구

단체와 교구의 연대

- **단체장 간담회**
- 협력분야 모색
- 평단협과 공동사업 추진

단체와 유관사회기관과의
연대 및 활동 분야 모색

단체 간 교류 및 화합지원

고유한 카리스마 찾기

조사 분석을 통한 정체성 확립

단체 교육 및 교육자료 마련

단체의 지속적인 연구를 위한
연구위원 발굴